

행복한 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I

행복한 재가복지센터 기관현황

□ 목 적 :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에 의해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또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 목욕활동 또는 수급자들 눈높이에 따라 개발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행복한 생활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한다.

□ 행복한 재가복지센터현황 표

시 설 명	행복한 재가복지센터		
사업장주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156번길 52-20		
시설의 종류	주·야간보호센터 / 방문요양		
대 표 자	이 정 미	센터장(시설장) / 직원 수	이 정 미 / 36인
시설규모	건물면적 206.57㎡		
수급자정원 / 지원 수	주야간보호	21인 / 23인 (인지지원등급자 2명은 정원 외 10%범위에 포함시킨다.)	
	방문요양	평균 28인	
운영시간 및 요일	주야간보호	월요일~토요일 (07:40~ 19:00 : 댁에서 모실에서 댁에 모셔다 드리는 시간 임)	
	방문요양	평일 06:00~18:00(그외라도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의 필요 및 요청에 의해 유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번호	2-41820-00117		
지정 / 신고일자	2022. 5. 1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보험 2022년 5월 1일 최초가입 / 배상책임범위 : 대인 2억원		

II

행복한 재가복지센터 이용정원 및 정원모집에 관한사항

1.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사항

1) 이용정원

주야간보호의 입소정원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 또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성질환을 앓은 21인과 인지지원 등급 2인을 포함한 23명을 정원으로 하며 방문요양은 정원을 따로 두지 않는다.

2)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등급자 및 등급 외(방문요양은 제외) 65세 이상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홍보지(전단지)등을 통하여 불임과 같이 모집한다. — **[붙임 1]**

1.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과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외 일반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정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에 의해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을 한다.

1. 수급자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제3자에게 제공함을 동의하는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으며 그 비밀보안을 유지한다.

2)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에 준하는 기간으로 수급자(보호자)와 시설의 협의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으로 준수하여 계약체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후 계약서 부분을 제공한다.
 - ①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날로 하고 만료는 서비스 종료일로 한다.
 - ③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등으로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과 수급자(보호자)간 협의하여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으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위 3항의 조건이 아닌 시설 이용 중 장기간 이용시간변동 등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변동 시에는 재계약이 아닌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간 협의하여 안내하며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시행령에 의해 장기요양급여 수가변동이 있을 시에는 해당 월 전월까지 안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시설에서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 13조”에 의거 월 한도액 범위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수급자(보호자) 사정에 의해 초과 이용 시에는 한도액 범위차액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3. 등급 외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고시에 따라 이·미용비, 병원비 및 식비 등 기타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외에 생활에 필요한 용품(기저귀 및 칫솔 등)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방문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등급 외 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026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주야간보호 이용료 기준 표]

구 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월12회(일8시간 이용 기준)이용가능하며 비급여를 제외한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 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 의료급여수급자 : 9%, 6% (40%~60%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 등급외의 경우 100% 본인부담으로 지불한다. (장기요양5등급수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협의 후 사정에 따라 결정한다.)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정원 내 일 때는 월12회 제외 후 잔여 일수는 자부담으로 하며, 정원 외 일 때는 월12회만 공단 보조를 받고 이용 가능
	중 식	1식 3,000원	3,000원 × 26식 = 78,000원
	간식비	1식 1,000원	1,000원 × 26식 = 26,000원
	석 식	1식 3,000원	3,000원 × 26식 = 78,000원(희망하는 분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생활고의 사정에 의한 경우 식비와 간식비를 50% 감경 또는 면제하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은 식비와 간식비를 20%감경 할 수 있다.		

6. 수급자는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4일의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20%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가족요양을 동시 제공하는 수급자는 20%가산을 하지 않는다.
7.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은 아래 장기요양 수가표에 의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본인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에 따라 감경대상자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요청 한다.

[2025년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수가 표]

[단위 : 원]

시간 등급	3~6시간		6~8시간		8~10시간		10~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이용수가	본인부담금	이용수가	본인부담금	이용수가	본인부담금	이용수가	본인부담금	이용수가	본인부담금
1등급	40,650	6,098	54,490	8,174	67,770	10,166	74,660	11,199	80,060	12,009
2등급	37,630	5,645	50,470	7,571	62,780	9,417	69,160	10,374	74,170	11,126
3등급	34,740	5,211	46,590	6,989	57,960	8,694	63,900	9,585	68,520	10,278
4등급	33,160	4,974	45,000	6,750	56,380	8,457	62,290	9,344	66,930	10,040
5등급	31,580	4,737	43,400	6,510	54,780	8,217	60,710	9,107	65,350	9,803
인지지원 등급	31,580	4,737	43,400	6,510	54,780	8,217				
	20일 이용가능		15일 이용가능		12일 이용가능					

※ 월 한도액 기준에서 이용 가능하며 초과 시 100%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공휴일 이용 시 30% 가산이 적용되어 사용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5년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 수가 표]

[단위 : 원]

분류 번호	급여제공시간	수가금액	본인부담금	
			일반대상 (15%)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장기요양 수가 표에 의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본인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감경대상자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달의 다음 달 6일까지 청구요청 한다. - 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 의료급여수급자 : 9%, 6% (40%~60%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 5등급은 1일 1회 이용가능하며 3등급~4등급은 월 한도액 안에서 1일 2회 이상 이용 가능(단 2시간 간격을 두어야 함.) - 월 한도액 안에서 1등급 ~ 2등급은 월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이용가능하며 3등급 ~ 4등급은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이용가능 함. - 근로자(요양보호사는 4시간에 30분 휴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급여비용의 30% ” 가산적용
가-1	30분 이상	17,450	2,618	
가-2	60분 이상	25,320	3,798	
가-3	90분 이상	34,120	5,118	
가-4	120분 이상	43,430	6,515	
가-5	150분 이상	50,640	7,596	
가-6	180분 이상	57,020	8,553	
가-7	210분 이상	63,530	9,530	
가-8	240분 이상	70,080	10,512	

4) 서비스 제공시간

본 시설은 주6일, 09:00 ~ 18:00(주야간보호 송영시간 제외) 운영을 하나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와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수급자(보호자)와 협의에 의한 서비스제공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변경즉시 공단에 통보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에 기록한다.(제공날짜와 시간은 시설과 수급자(보호자)와 협의 후 조절이 가능하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권리 및 수급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시설)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 체결 및 안내를 한다.

1) 수급자의 권리

-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주야간보호에 한함)
-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의무

- ① 입소 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다.
- ② 월 이용료 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다.
- ③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구성에 의무가 있다.
- ④ 센터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에 의무가 있다.
- ⑤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⑥ 특별(고열 등 신체움직임이 힘들 때)한 경우 외에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할 의무가 있다.
- ⑦ 기타 센터 규칙 이행의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1. 입소 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다.
- 2. 월 이용료 납부에 대한 의무가 있다.
- 3.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구성에 의무가 있다.
- 4.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에 의무가 있다.
- 5.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6. 특별(고열 등 신체움직임이 힘들 때)한 경우 외에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할 의무가 있다.
- 7.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가 있다.

5)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가 있다.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가 있다.

6) 계약해지

-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는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다만 납부의 의무 의지가 있는 경우 기관과 상의 후 결정한다.
 -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⑦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⑧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 ⑨ 기타 신원인수인(보호자) 및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협의 후 해지한다.

2. 시설에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보호자와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계약 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설 내에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보호자나 수급자에게 송달 처리 한다.(다만 수급자 및 보호자가 받기를 원치 않으며 시설에 처리를 맞기면 그리한다.)

3. 이용료 및 비용부담 & 변경

1) 이용료 및 비용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와 시설이 필요로 하는 경우

2) 이용료 및 비용변경 절차

장기요양인정등급변경 및 계약만료로 재계약 필요 시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에게 통보하여 협의한 후 장기요양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며 장기간 이용시간변동 등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변동 시에는 재계약이 아닌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간 협의하여 안내하며 공단에 통보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부당청구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특별보호

1.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 ②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2. 특별서비스 기록 및 비용

- 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② 특별서비스제공으로 수반되는 비용 발생 시 모든 비용은 신원인수인(보호자)가 지급한다.

- 5) 본 기관은 연2회 보호자회의 및 교육과 분기별 인사위원회 회의 및 주기적으로 종사자, 수급자, 보호자에게 급여제공지침 교육 및 법정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이들의 인권보호 및 알권리와 생활 안전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도모합니다.

[붙임]



- 기 관 명 : 행복한 재가복지센터 , ☎031)585-5018, 010-3721-2489
-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156번길 52-20
- 모집정원 :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및 인지지원등급 어르신.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을 받지 않은 일반노인성질환 어르신 등 총 23명

♣ 주간보호 서비스란?

1. 주간 일정시간동안 어르신들에게 지원, 기능회복 훈련, 간호 및 처치, 어르신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치매, 중풍,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병 어르신을 낮 시간 동안 돌봄.
3. 어르신이 가정에서 센터, 센터에서 가정까지 차량운행.
4. 주 1회 목욕 서비스.

♣ 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1.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및 인지지원등급 어르신.
2.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을 받지 않은 일반노인성질환 환자 등

♣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는?

1. 접수 상담 및 이용신청. (의료보험공단)
2. 인정조사.
3. 의료보험공단 현지 조사 및 어르신 가족 상담.
4. 가까운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 발급 후 제출 기한까지 의료보험공단 제출.
5. 시·군·구 단위로 인정조사와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6. 결과통보.
7. 장기요양등급인정서 +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사용.

♣ 2026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주야간보호를 "하루8시간 월15일" 이상 이용하면 한도액의 20%추가 산정하나 가족방문요양을 제공받은 월에는 추가산정 안 된다.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표 (본인부담금 15%기준)

시간 등급	3~6시간		6~8시간		8~10시간		10~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이용수가	본인부담금	이용수가	본인부담금	이용수가	본인부담금	이용수가	본인부담금	이용수가	본인부담금
1등급	41,820	6,273	56,060	8,409	69,730	10,460	76,820	11,523	82,370	12,356
2등급	38,720	5,808	51,930	7,790	64,590	9,689	71,160	10,674	76,310	11,447
3등급	35,740	5,193	47,940	7,191	59,640	8,946	65,750	9,863	70,500	10,575
4등급	34,120	5,118	46,300	6,945	58,010	8,702	64,090	9,614	68,860	10,329
5등급	32,490	4,874	44,650	6,698	56,360	8,454	62,460	9,369	67,240	10,086
인지지원 등급	23,490	4,874	44,650	6,698	56,360	8,454				
	20일 이용가능		15일 이용가능		12일 이용가능					

※ 월 한도액 기준에서 이용 가능하며 초과 시 100%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공휴일 이용 시 30% 가산이 적용되며 18시 이후 이용시간에 따라 사용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복한 재가복지센터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비용은?

1. 시간 : 09:00~ 18:00 (송영시간 제외), 센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 주6일 운영하나 이용은 센터와 협의 후 계약으로 정한다.
2.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비용
 - 1) 국민 기초 생활 수급권자 : 전액무료
 - 2) 감경이용자(의료 수급권자)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4%~9% 본인부담.
 - 3)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본인부담.

♣ **행복한재가복지센터 비급여 내용** (장기요양등급이 없으신 분은 이용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이 개인 부담입니다)

1. 비급여 내용 : 개인위생용 (기저귀 등), 식대 및 간식

2. 식대 및 간식비 현황

- 1) 일반적용 15%의 1일 식대비

※ 점심·간식 : 총 4,000원 , 점심·간식·저녁 : 총 7,000원

- 2) 감경대상의 1일 식대비 (일반대상의 80%를 적용합니다.)**

※ 점심 · 저녁 : 3,200원 , 점심·간식·저녁 : 5,600원

- 3) 기저귀 및 여벌 옷, 양말 등 개인용품은 가정에서 구입하셔서 센터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 행복한 재가복지센터 주간일정표

[illegible]

♣ 방문요양 2026년 장기요양 수가 표 (본인부담금 15%기준)

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금액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본인부담 (15%)	2,618	3,798	5,118	6,515	7,596	8,553	9,530	10,512

- 5등급은 1일 1회 이용가능하며 3등급~4등급은 월 한도액 안에서 1일 2회 이상 이용 가능(단 2시간 간격을 두어야 함.)
- 월 한도액 안에서 1등급 ~ 2등급은 월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이용가능하며 3등급 ~ 4등급은 월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이용가능 함.
- 1등급 (144시간)~2등급(136시간)은 하루 4시간 이용 시 1등급 월35.8회, 2등급월33.3회 서비스 가능 함.
- ※ 근로자(요양보호사는 4시간에 30분 휴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급여비용의 30% ” 가산적용